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4. 1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6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진정래)

- 가. 제안이유
 -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세액 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명확화(안 제9조의2)
 -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9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에서 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설립인가(제85조)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조직변경인가(제105조의2)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하고,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용어 정의를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음.
 - 안 제11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을 ‘자동이체 방식’으로 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을 공제 할 수 있도록 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.
- 검토 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뿐 아니라,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확대 및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근거 법령 규정(안 제9조의2)
- 나. ‘전자송달 방식’ 및 ‘신용카드 자동이체’를 신청한 경우, 계좌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가 되도록 공제범위 확대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(2018.2.1. ~ 2.21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중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”를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 2”로, “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”을 “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”를 “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”을 “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”을 “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) ①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</p> <p>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나 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-----.</p> <p>제11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